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4고정2153 모욕

피 고 인 이00 (51-1), 목사

주거 충남 부여군

송달장소 인천 남구

등록기준지 경주시

검 사 구응서(기소), 이정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형태(국선)

판 결 선 고 2014. 9.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17:00경 인천 남구 도화동 OO타워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

실에서, 목사인 박OO, 이OO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피해자 홍OO에 대하여 피해자가 위 연합회 회장 임기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의 발언을 묵살하는 등 권력에 눈이 먼 사울왕처럼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홍OO 목사는 성경에 나오는 악신들린 사울왕과 같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1. 고소장
- 1. 배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악신들린 사율왕과 같다'는 표현이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인 가치판단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욕의 고의도 없고, ② 박OO, 이OO이 피해자의 측근들로서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으며, ③ 피해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박OO, 이OO이 피해자의 임기연장을 위한 정관변경에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돈봉투를 건네자 이를 나무라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말하게 되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은 권력에 눈이 어두워져 사위인 '다윗'을 질투하여 창을 던져 죽이려다 실패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중 적국의 군사가 쏜 화살에 중상을 입고 산으로 피신하다가 자살한 비극의 왕으로서, 비록 피고인이 성경을 인용하여 비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하여 "성경에 나오는 악신들린 사율왕과 같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인 가치판단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모욕의 고의도 인정되는 점, ② 설사 박OO, 이OO이 피해자의 측근이라 하더라도 박OO, 이OO이 피해자와 친·인척관계 등의 친밀한 관계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피고인도 박OO, 이OO 등을 통하여 판시 표현이 널리 알려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수사기록 24면) 전파가능성이 있는 점, ③ 박OO, 이OO이 피고 인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려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어 정당행위에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엽	